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치과 과장 **오주은**



당뇨와 잇몸병

당뇨병은 내과적 치료로 조절 가능하지만 만약 치료를 받지않아 잘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잇몸도 예외가 아니라서 당뇨의 영향으로 잇몸병이 생기기 쉬우며, 건강한 사람에 비해 그 진행이 파괴적이고 매우 빠릅니다. 또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인에 비해 더욱 철저한 잇몸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잇몸병)이 잘 생깁니다.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태라 불리는 세균의 덩어리입니다. 치태가 잇몸과 치아에 달라붙어서 잇몸병을 일으

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세균과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균형을 이루는 반면, 당뇨병환자에서는 우리 몸의 방어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서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와같이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인에 비해 치주질환에 대한 위험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당뇨병 환자는 위험성이 약 20배 정도나 높습니다. 치주질환은 대체로 통증없이 진행되지만 당뇨병환자에서는 잇몸이 붉고, 통증이 심한 '치주농양'이 흔히 생기게 됩니다. 치주질환을 치료한 후에 재발의 방지를 위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치태를 철저히 제거해

야 하며, 치주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치주 치료후에 당뇨가 잘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치태가 조금만 생겨도 잇몸병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즉, 잇몸의 파괴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치주질환이 발생과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치아를 젊은 나이에 뽑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건강인에 비해 더욱 철저한 잇몸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아를 매일, 철저히 여러번 닦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태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약간은 남게 마련입니다. 건강인에서 치주질환을 일으키지 않은 정도의 치태가 당뇨병 환자에서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이를 닦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당뇨병 환자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문의:포천의료원(031-539-9114)

여·성·상·식

경기가정·성상담센터 **이문환**



Q 생리 때만 되면 신경질이 나고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A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확실히 여성은 생리 때가 가까워지면 신경질을 내는 등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증상으로는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등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로는 생리가 시작되기 7~10일 정도 전부터 신경질, 불안, 긴장감, 정서 불안, 공격성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 증상과, 거기에 따라 유방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손발이 붓는가 하면 두통, 변비, 위장장애 같은 신체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통틀어 월경 전 신드롬(월경 전 긴장증)이라고도 합니다. 생리할 때 동반되는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두통입니다. 여성의 약 60%가 생리 주기와 관련 된 편두통을 겪는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생리할 때 머리가 아프다는 여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에스트로겐의 저하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면 뇌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되어 뇌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육신육신한 박동감이 느껴지는 편두통을 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이 불안해지는 원인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으로 체내에 수분이나 나트륨이 축적되기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정확한 증거는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엔돌핀으로 대표되는 내인성 모르핀(morphine) 같은 물질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리하기 전에 이러한 심신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여성은 생리를 하는 전체 여성의 3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여성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들 중에는 생리때가 가까우면 정말로 여성들이 그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심리상태로 여성을 대한다면 여성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은 더욱 더 힘들고 괴로움을 아셔야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호르몬에 대한 이상변화를 좀더 완하시켜줄 뿐만 아니라, 점점 민감한 증상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경기가정·성상담센터(031-542-3171)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회사에 출근도중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바 공무원과 달리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의 1호의 규정에서 의거 업무상 사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

한 출근(도보,차량운행 등)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중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고 기타 일반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업무처리시 공무원법을 준용하지는 않는다. <참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으며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031-877-7582/3)

한·방·상·식

한의학박사 **김홍순**



부인과 요실금

요실금이란 소변을 참을수 없어서 소변이 새거나 자기도 모르게 짙짙짙 나오는 것으로서 심한경우는 소변을 귀찮을 정도로 자주 보게된다. 특히 출산을 많이 한 여성이나 40~50대 부인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가야할 정도의 시간도 없이 속옷에 실례를 하기도 한다. 이증상은 중년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방광의 허부와 요도가 출산으로 인하여 심하게 이완되어 정상적인 요도 중심부의 저항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도의 길이가 짧아서 감

염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정상인의 소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일 4~5회의 정도로 방광의 기능이 유지되어 탄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실금 환자는 소변이 마려우면 괄약근이 지탱을 하지 못해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 진성요실금과 가성요실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성요실금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방광괄약근을 손상 당하거나 척추손상으로 인해 방광괄약근을 지배하는 신경을 손상당한 경우이며 가성요실금은 방광허부의 요도가 막히거나 방광벽의 마비 때문에 저장된 소변이 방광 내압의 향진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경우

를 말한다. 또한 긴장성 요실금이라 하여 기침, 재채기, 크게 웃는 것 등으로 복압이 상승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방광 괄약근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이외에도 중풍마비의 후유증으로 방광기능의 마비상태에서 오는 요실금이 있고, 임신중 태아가 방광을 압박하여 발생하기도하며 출산후에도 자궁 및 방광괄약근이 늘어져서 수축이 안되어 발생되기도 한다. 요실금을 한방에서 소변불금(小便不禁) 및 유뇨증(遺尿症)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 문헌에 따라 수면중의 소변을 유노라고 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요실금이라 하기도 한다. 또한 유노증은 소변이 나오는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요실금은 소변이 나오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참을 수 없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다. 신과 방광은 서로 통해 있는데 이 두곳이 약해지면 소변의 이상을 초래한다. 소변의 이상은 막히는 것과 새는 것이 있는데, 막히는 것은 용폐증, 혹은 불리증이라 하고, 새는 것은 요실금 혹은 불금증이라 한다. *문의:포천한의원(031-535-2536)

세 무 상 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지난해에 장의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약 1천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배당금과 은행이자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저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귀하는 이번 5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작년 받은 배당금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 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일명 뮤추얼 펀드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제외됨), 주권상장법인의 내국법인(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국내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종합과세되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금융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되는 금액만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Q 귀하는 이번 5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작년 받은 배당금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란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 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일명 뮤추얼 펀드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제외됨), 주권상장법인의 내국법인(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국내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종합과세되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금융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되는 금액만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신축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주택을 매도하려고하니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등기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하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7조).

귀하와 같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종래에는 같은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통상인우보증이라 함)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1991년 2월 14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분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문의:박문우변호사 (031-874-1652)

■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4. 5. 1. ~ 5. 31
-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가입 사업주 민원 서류 작성대행
- 신용카드 (Welco-LG 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 가능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국제청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도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자진가입을 촉진코자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4. 5. 1 ~ 5. 31)

◆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카드 (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 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납부 방법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or.kr) 참조 의정부 지사 TEL. 031) 828 - 3114